

## 수수료의 부과기준 및 절차에 관한 지침

제정: 2022. 12. 31.

개정: 2025. 09. 30.

**제1조(목적)** 이 지침은 회사가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58조에 따라 회사가 투자자에게 수수료를 부과함에 있어 투자자 간의 정당한 사유없는 차별을 방지하고,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수수료 부과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적용범위)** 회사가 투자자로부터 받는 수수료의 부과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법, 동법시행령, 동법규칙, 금융투자업규정 및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, 그 외 관련 법규(이하“관련법규”라 한다)와 해당 신탁계약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는 이 지침을 적용한다.

**제3조(용어의 정의)** 이 지침에서 “수수료”라 함은 회사가 집합투자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적용되는 각종 보수 및 수수료(이하 “수수료”라 한다)로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.

1. 보수: 집합투자재산의 운용 및 관리 등에 대한 회사가 받는 대가로서 집합투자기구가 부담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.

가. 집합투자업자 보수: 회사가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대가로서 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받는 금전

나. 판매보수: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가 투자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로 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받는 금전

다. 신탁업자 보수: 집합투자기구의 신탁업자가 집합투자재산의 보관·관리의 대가로 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받는 금전

라. 일반사무관리회사 보수: 일반사무관리회사가 기준가격의 계산 등 업무수행의 대가로 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받는 금전

마. 집합투자업자 성과보수: 회사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연동하여 미리 정하여진 산정방식에 따라 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받는 금전

- 바. 집합투자기구 평가회사 보수: 집합투자기구 평가회사가 집합투자기구를 평가하고 이를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업무의 대가로 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받는 금전
2. 수수료: 투자자가 부담하는 집합투자재산 또는 투자자문·일임재산의 판매, 운용 및 관리 등에 대한 수수료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.
- 가. 판매수수료: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행위에 대한 대가로 판매회사가 투자자로부터 직접받는 금전을 말하며, 수수료 지불시점에 따라 선취판매수수료와 후취판매수수료로 구분한다.
- 나. 환매수수료: 집합투자자가 신탁계약에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집합투자증권을 환매하는 경우에 부과하는 금전을 말한다.
- 다. 투자자문 수수료 및 투자일임 수수료: 회사가 제공하는 투자자문 또는 투자일임서비스에 대한 대가로서 투자자 또는 투자일임재산으로부터 받는 금전을 말하며, 그 투자자문 재산 또는 투자일임재산의 운용실적에 연동하여, 투자자문계약서 및 투자일임계약서에 미리 정해진 산정 방식에 따라 받는 성과보수를 포함한다.

#### 제4조(수수료 부과기준)

- ① 회사는 투자자로부터 받는 수수료의 금액 또는 비율을 정함에 있어서 투자자를 정당한 사유없이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.
- ② 수수료는 운용자산의 특성, 회사가 부담하는 행위, 투자자의 투자규모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책정하여야 한다.
- ③ 수수료에 적용되는 세부적인 제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1. 집합투자재산 운용과 관련한 성과보수는 법 제86조, 동법시행령 제88조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4-65조에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고 그 내용을 투자설명서와 집합투자규약에 기재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받을 수 있다.
  2. 환매수수료는 환매금액 또는 이익금을 기준으로 부과하며 판매회사 또는 회사가 환매대금을 지급할 때 이를 공제하는 방식으로 받음으로써 해당 투자자가 부담하며, 투자자가 부담한 환매수수료는 집합투자재산에 귀속된다.
  3. 투자자문 및 투자일임 계약과 관련된 성과보수는 법 제98조의2, 동법시행령 제99조의2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4-77조의2에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받을 수 있다.

**제5조(수수료 부과절차)**

- ① 회사가 집합투자업 및 투자자문·일임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투자자로부터 받는 각종 수수료 등의 비율 또는 금액, 그 부과절차는 각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 및 투자자문·일임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- ② 회사는 집합투자기구 및 투자자문·일임계약의 수수료를 결정함에 있어서 관련 법규에서 정하고 있는 제반 제한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, 과도한 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.
- ③ 회사는 총비용의 조절 또는 적절한 배분을 위하여 집합투자증권, 투자자문 및 일임계약의 판매회사, 신탁업자, 일반사무관리회사 등 집합투자기구 및 투자자문·일임계약의 관련 회사와 협의할 수 있다.

**제6조(공시 및 통보)** 회사가 이 지침을 제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하며, 법 제58조제3항에 따라 한국금융투자협회에 통보하여야 한다.

**부 칙****제1조(시행일)**

이 지침은 금융위원회의 일반 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일(2023.02.01)부터 시행한다.

**부 칙****제1조(시행일)**

이 지침은 투자일임업 등록일(2025.08.29)부터 시행한다.